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칙 및 학칙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의무화 >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52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06.
3. 회부연월일 : 2026. 2. 0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사제도 변경 등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공지되어 학생들의 학업 계획 변경을 초래하고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사제도 등 학칙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학교와 학생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의 장에게 학칙의 내용을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내용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u><신 설></u>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규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학칙의 내용을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내용을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칙의-----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안내의 기간·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 일수,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목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학생의 학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기재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대대적인 학과 개편 및 학칙 개정이 추진되면서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이를 결정하여 학생들의 반발을 사거나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갑작스럽게 공지되어 분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에 개시되기 전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사제도 등 학칙 변경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학칙 안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개정안은 학생의 학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칙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알림으로써 학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바람직한 취지로 보임.

□ 다만, 이미 현재 학교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학교규칙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있으며,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은 학칙 제·개정 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²⁾

- 추가적으로, 개정안은 학칙 안내와 관련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교육부령으로, 공·사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칙 안내의 방법 등을 국·공·사립별·지역별로 다르게 규정할 경우, 대학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규범 체계의 통일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서울대, 연세대 등 개별 학교에서도 대학 홈페이지에 학칙을 상시 공지하고 있으며, 학칙 변경 시에도 공지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칙 안내에 대한 별도의 법률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 13. (생략)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③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교육부는 이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학교규칙 등이 공시되고 있으며, 학칙 제·개정 시에도 제·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